

「2025년 창업중심대학」  
IP R&D 컨설팅 프로그램  
과업지시서(제안요청서)

2025. 8.

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

## □ 일반사항

### 1. 개요

- 1) 과업명: 2025년 창업중심대학 IP R&D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용역
- 2) 용역기간: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19일까지
- 3) 용역개요
  - BM진단, 특허확보 전략수립 및 선행기술조사, 특허출원명세서(또는 발명신고서) 작성 등 1:1 맞춤형 컨설팅 수행
- 4) 용역금액: 30,0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- 5) 계약방법: 협상에 의한 계약

### 2. 과업지시서의 적용 범위

- 1)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과업업무를 수행하는 데, 귀 기관의 여건과 지시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)과 협의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2) 본 과업지시서에는 언급되지 않는 과업 수행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지원단에서 요구(지시)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때 용역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에 따른 과업수행을 하여야 한다.
- 3) 과업의 수행은 지원단과 면밀한 협의,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, 지원단이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과업수행 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.
- 4) 계약체결 후 결과물 완료시까지 지원단이 요청할 경우, 수행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며, 가능한 문서화하여 해당사항을 기록한다.

### 3. 진행 관련 보고

- 1) 진행과업 추진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지원단에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, 사업계획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단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2) 미팅을 통해 도출된 안건 및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은 지원단과 협의하여 용역내용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.

### 4. 용역감독

- 1) 용역감독 및 점검
  - 지원단은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수시로 용역사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, 용역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  - 지원단은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하여 용역사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할 수

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사는 지원단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.

2) 법률준수의 의무

- 용역사는 관련법과 각종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용역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.
-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든 제반 사항은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하여야 한다.

5. 기타 준수사항

- 1) 계약 후 용역행사 3일 이전에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2) 용역비용에는 용역과 관련된 인건비, 제작비, 교통비, 이윤,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 일체가 포함되어 있으며, 용역사는 일체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. 단, 진행상 추가 요인 발생 시 용역사는 지원단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추가 금액은 지원단 승인 후 정산한다.
- 3) 운영 책임자는 용역사 직원으로 선발하고 운영을 위한 인력 공백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.
- 4) 과업 종료 후 과업 결과물의 사진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5) 기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원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
□ 과업의 내용 및 범위

과업	주요내용
IP R&D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	<p>■ 목적: 창업기업의 핵심특허 발굴 및 IP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 등 기업별 맞춤형 IP R&amp;D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사업화 성공률 제고</p> <p>■ 세부내용</p> <p>①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BM진단</p> <p>② BM-IP 연계 핵심기술 도출 및 특허 확보 전략 수립</p> <p>③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서류 작성 : 특허출원 방향 제시, 특허출원명세서 또는 발명신고서 작성</p> <p>④ 창업기업 제품의 특허침해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: 경쟁기업특허의 침해가능성 분석, 무효화 및 회피설계 등 대응 전략 마련</p> <p>⑤ 아이템의 보완사항에 따른 멘토링 및 개선점 도출</p>

□ 과업결과 제출

구분	제출물
최종보고	<p>- 프로그램 결과보고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별 컨설팅 보고서(BM진단 및 선행기술조사 등)</li> <li>• 특허 서류 작성(출원명세서 또는 발명 신고서 증빙 必)</li> </ul>

※ 용역사 평가 지표(안)

부문별	평가지표(안)	배점한도
사업수행 능력 부문	최근 3년 동등 이상 또는 유사 용역 수행 경험(건수, 금액)	25
사업수행 기술 부문	사업의 이해도, 사업전략 및 PM, 기술(지식) 및 기능 등	50
사업 관리 부문	사업수행조직, 운영관리, 장애대책 등	25